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우선심사사유에 조기공개신청 출원 추가〉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77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13.
3. 회부연월일 : 2026. 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일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출원공개를 하되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출원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에서 기술제품의 출시 및 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잠재적 특허침해 리스크를 예방하고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권리확보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보다 개선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및 제64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심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제1의2호 및 제64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1조(우선심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u><신설></u> 2. 3. (생략)	제61조(우선심사)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64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를 신청한 특허출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u> 2. 3. (현행과 같음)
제64조(출원공개)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u>신청한</u>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64조(출원공개) ① ----- ----- ----- -----출원공개를 신청한-----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64조제1항¹⁾은 지식재산처에 심사 중인 출원이 출원 후 1

1)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 특허출원이 공개되도록 하는 ‘특허출원 공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 내용을 조기에 공개함으로써 기술의 중복 연구·개발을 방지하고 후발 연구자나 기업이 기술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또한 현행법 제61조²⁾는 공익상 필요가 크거나 조속한 권리 확보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에 대해서는 일반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우선심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첨단기술·국가전략기술과 같이 신속한 권리화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경우 우선심사를 통해 발명자의 권리보호와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구분	우선심사 대상
산업분야	①방위산업, ②녹색기술, ③4차 산업혁명, ④첨단기술
출원인	⑤벤처기업, ⑥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⑦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⑧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정책적 사유	⑨제3자 실시, ⑩수출촉진, ⑪국가·지자체 등, ⑫자기실시, ⑬국가연구개발사업, ⑭조약우선권기초출원, ⑮외국 지식재산관청과 합의, ⑯지역특구 특화사업, ⑰첨단의료단지 의료연구개발, ⑱대한민국 국제조사, ⑲재단의 예방 등

자료: 지식재산처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1.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특허출원일
- 2) 「특허법」 제61조(우선심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業)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편, 기업이 상당한 자본을 투입한 기술·제품·공정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과 기업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지므로 선제적인 특허침해 조사(FTO³⁾)가 중요한데, 법적으로 비공개 기간에 있는 출원 건에 대해서는 FTO 분석을 할 수 없어 정확도 높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⁴⁾.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이 원활하게 FTO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자발적인 출원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와 출원공개 제도를 연계하여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한 특허출원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특히 기술 진보의 속도가 빠르고 특허 출원이 활발한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FTO 분석의 사각지대(비공개 기간에 있는 출원)를 해소하여 기술의 중복 연구·개발을 방지하고 후발 연구자나 기업이 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등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이를 통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최근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기간 지연 및 심사관 부족이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특정 특허출원을 우선심사하면 일반 특허출원의 심사기간은 그만큼 지연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3) FTO(Freedom to Operate): 특허침해 분석(침해조사, 침해회피 조사)

4) 입법조사처, “기업의 특허관리 리스크와 제도개선 방안”, 「이슈와 논점」(제2461호, 2026.1.19.)

주요국 심사 처리건수 및 기간 비교('24)

분 야	구 분	한 국('25)	일 본	미 국	유 럽	중 국
특 허	심사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건)	<u>185</u>	129	64	66	잠정 83
	심사 대기기간(개월)	<u>14.7</u>	9.1	19.9	5.5	13.4
상 표	심사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건)	1,791	1,807	977('23)	1,600	3,361
	심사 대기기간(개월)	11.9	6.9	8.2('23)	0.52	미공개

자료 : 지식재산처

우선심사 건수가 너무 많은 경우 실제로 시급한 우선심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우선심사 제도는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⁵⁾.

만약 개정안과 같이 우선심사 대상에의 포함 여부를 특허출원인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우선심사 제도의 남용으로 일반 특허출원의 심사 기간이 보다 지연되고, 시급한 특허출원조차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주: 주요국은 조기공개만으로 우선심사를 허용하는 사례가 없고, 대부분 우선심사 제도를 예외적으로 운영함.

- 일본·중국은 국익 및 특정 산업 활성화 등 한정된 요건(6~7종)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심사를 허용
- 미국은 사유 제한이 없는 우선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수료 및 연간 건수 제한을 통해 심사 수요를 관리

* 대기업 기준 \$4,515(약 653만 원)의 수수료 부과, 연간 처리 건수를 20,000건으로 제한

지식재산처는 ① 현재도 우선심사 신청비율이 높은 상황⁶⁾에서 조기공개 우선심사 도입시 일반 특허출원 심사가 더욱 지연될 우려가 있고, ② 주요국에 도입되지 않은 제도를 우리만 도입하게 되면 해외 기업이 조기 공개된 우리기업 특허를 회피하여 우리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58

6) 우선심사 신청비율(우선/전체) : 韓('25) 18.6%, 日('22) 10.5%, 美('22) 3.5%